

## ●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 제2023-05호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1. 제정이유

‘23. 6. 11. 전부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및 기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를 폐지하고, 고시를 제정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기반 조성을 통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기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판외 고시 제정을 통한 세부적 근거 마련

나. 수상레저안전법 전부 개정 시행(‘23.6.11.)에 따른 법 조항 변경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 제25조 → 제30조

– 과태료 : 제59조제1항제7호 → 제64조제1항제4호

다. 서귀포시 관내 지정 해수욕장(해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 화순해수욕장, 중문해수욕장, 포선해수욕장, 신양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 기간내(수영경계선 내측 해상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소재 하도 철새도래지 수문 인근 수역(해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추가 고시

마.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바. 부칙(시행일 지정, 공고 폐지), 별첨(금지구역 수역도) 추가

####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10월 3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수상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단체·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및 문의처

1) 우편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11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우)63568

2) 팩 스: 064-793-2948

3) 전자우편: myddyeval9@korea.kr

4) 문의처: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 (☎ 064-793-2549)

#### 4. 고시제정(안)

서귀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호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안)

이곳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23년 ○월 ○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

####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별첨 참고)

장 소	금지기간	금 지 구 역	대상
화순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모든 수상레저 기구
중문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표선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신양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하도철새도래지 인근 수역(해수면)	연중	하도철새도래지 수문 기준 해수면측 50m 이내 해상 ※ ①~④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내측 해상 ㄱ ①33-30-34.95N 126-53-58.42E ┆ ②33-30-36.09N 126-53-58.04E ┆ ③33-30-36.63N 126-53-59.68E ㄴ ④33-30-35.62N 126-54-00.26E	

2. 문 의 처 :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064-793-2449,2549)

3. 참고사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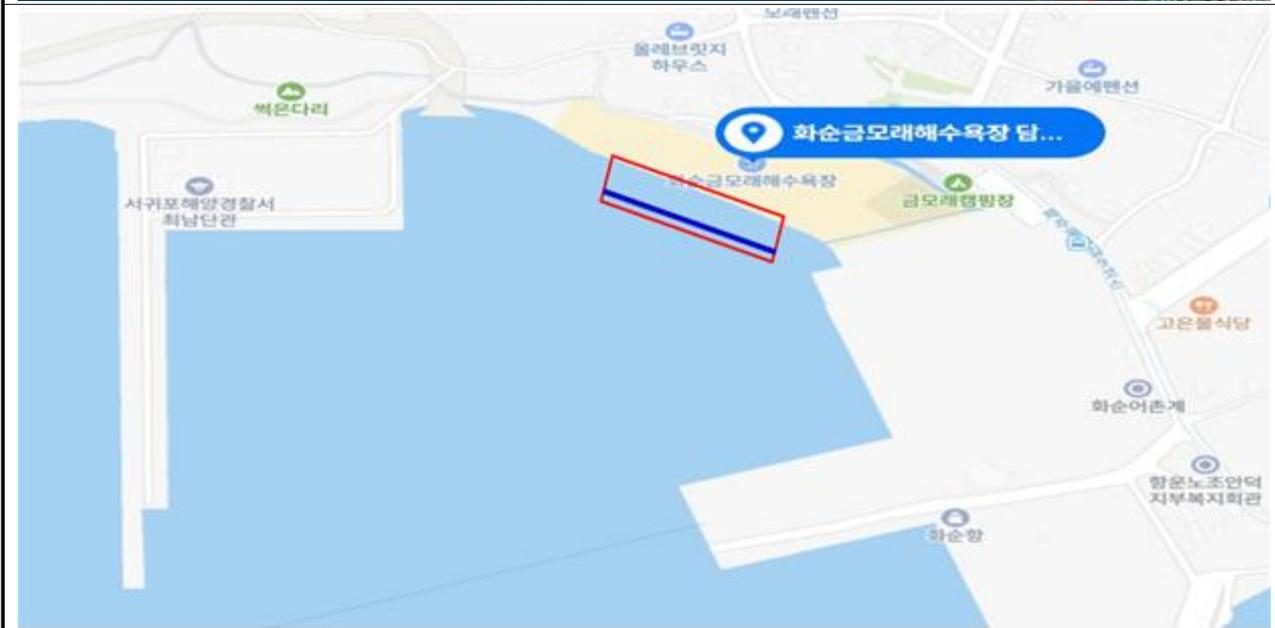
#### 부 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존 서귀포해양경찰서 공고(2020.4.13.)는 폐지한다.

**별첨**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수역도**



□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 수영경계선

- 기간: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
- 구역: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 대상: 모든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 관할: 서귀포해양경찰서(064-793-2449, 2549)

화순해수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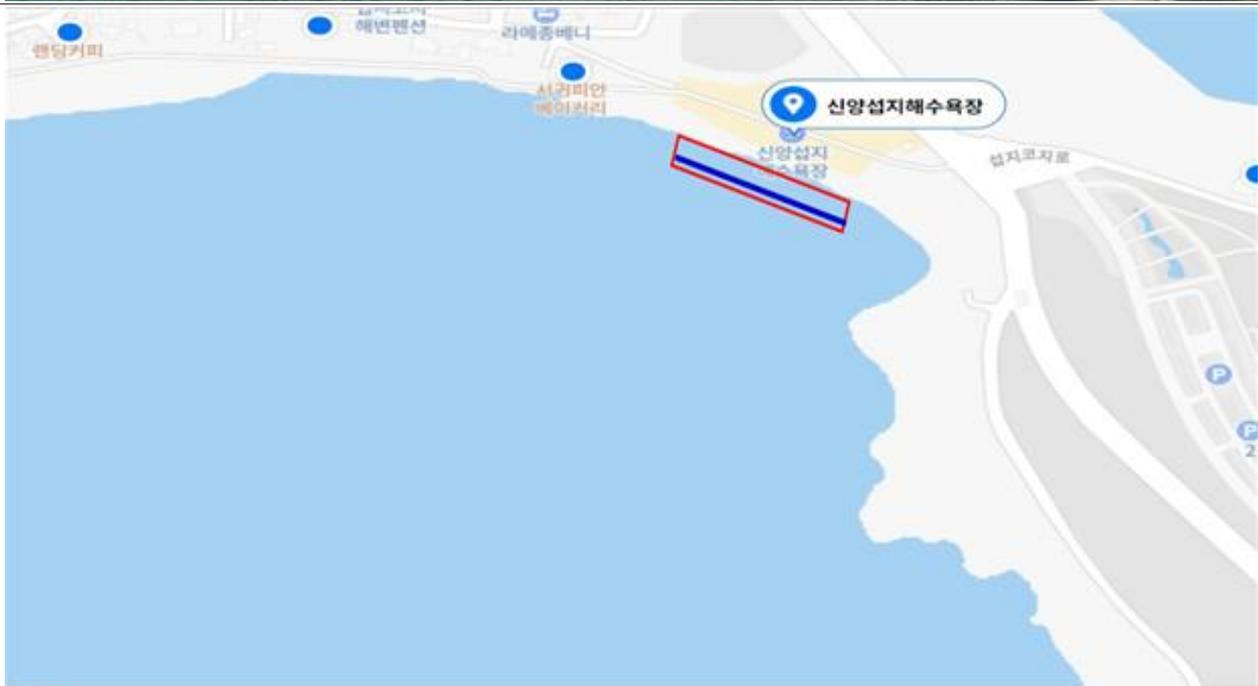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수영경계선

- 기간: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
- 구역: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 대상: 모든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 관할: 서귀포해양경찰서(064-793-2449, 2549)

중문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수영경계선

- 기간: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
- 구역: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 대상: 모든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 관할: 서귀포해양경찰서(064-793-2449, 2549)

### 신양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수영경계선

- 기간: 연중
- 구역: 하도철새도래지 수문 인근 해수면측 50m 이내 해상
- 대상: 모든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 관할: 서귀포해양경찰서(064-793-2449, 2549)

하도 철새도래지 수문 인근 수역(해수면)